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

< '21.8.11,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 >

한국연구재단이 2020년도에 실시한 연구과제 상세정산(구 정밀정산)의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오니,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달라진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 동 지적사례는 종전규정('20.12.21까지 적용)을 적용하여 지적된 사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1.1. 시행)」을 적용받는 연구과제와 지적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음.

1. 이공/과학기술 분야

구 분	주요 지적 내용
연구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연구원에게 전문가 활용비 지급· 위탁연구과제의 실집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정산· 비참여연구원에게 국내여비 지급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의 연구수당 단독 수령· 실 집행 인건비의 20% 초과하여 연구수당 지급
간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관 승인 없이 간접비를 차년도로 이월

2. 인문사회 분야

구 분	주요 지적 내용
인건비 (전문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 직접비를 인건비로 초과하여 전용
학술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기관 자체기준(전문가활용, 여비 등) 초과

1. 연구활동비

① 참여연구자에게 전문가활용비 부담 집행

지적내용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워크숍에서 강연한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에게 전문가활용비(강연료 등) 집행

관련규정

- 전문가활용비는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할 수 없음

구분	세부내용
종전 (‘20.12.31 까지)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과기정통부)></p> <p>전문가 활용비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을 제외하고 지급</p> <p>*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의미</p>
변경 (21.1.1 부터)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1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8조 및 제68조와 혁신법 매뉴얼 (21.6.30, 과기정통부)></p> <p>(비영리기관) 참여연구자와 해당 정부출연기관 내 동일한 부서(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불가</p> <p>*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p> <p>**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p> <p>(영리기관)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계상불가</p>

② 위탁연구과제의 부가가치세 미정산

지적내용

- 위탁연구과제 연구개발비의 실집행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재정산하여 회수하지 않음(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재정산하여 차액은 추가 반납해야함)

<부가가치세 재산정 방법 예시>

당해연도 연구비	연구비 집행액 (A)	부가가치세 납부액 (B)	당해연도 연구비 실집행액 (C=A-B)	부가가치세 재산정액 (D=C×10%)	추가반납액 (B-D)
50,000,000원	49,000,000원	4,545,455원	44,454,545원	4,445,455원	100,001원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등 해당하는 금액은 계상불가(실제 환급 받지 아니한 경우 포함)
- 정산 시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재정산하여 차액발생 시 추가 반납

< (구)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매뉴얼(한국연구재단) >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2항 및 제42조2호,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정산
 - 연구개발비의 실 집행액으로 정산하되 국세청으로 부터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세는 국세청의 부가세 환급시기와 관계없이 연구기간 내에 선 제외하고 정산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등록 시 매입에 따른 공급 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등록
 - 매출부가세 인정범위
 - 매출부가세=연구개발비(직접비+간접비)의 실집행액×10%
- ※ 단, 연구개발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위탁연구개발과제 종료(최종) 후 정산 시 실 집행액 적용 가능
-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연구 개발비 부당집행 금액으로 회수대상에 포함

③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여비 집행

□ 지적내용

- 연구과제 참여하지 않은 비참여연구자에게 국내여비를 부당 지급
 - ※ 비참여연구자를 전문가활용시(여비 포함), 자체 규정에 따라 전문가활용비로 집행

□ 관련규정

- 여비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참여연구자에게 지급가능(2021.1.1부터는 연구 근접지원인력도 연구과제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가능)

구분	세부내용
종전 (20.12.31 까지)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과기정통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변경 (21.1.1 부터)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제5항 및 혁신법 매뉴얼(21.6.30, 과기정통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3. 연구수당

① 참여연구자의 연구수당 단독 집행

□ 지적내용

- 해당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원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 단독수령
- * 사례1)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이전 기관에서는 참여연구원이 존재하고, 이직 후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참여연구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 * 사례2) 연구수당 지급시점에만 참여연구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참여연구자가 중도퇴사 등)
- * 사례3) 연구수당 지급 시점까지는 연구책임자 단독 참여 후, 지급시점 이후에 참여연구자가 존재할 경우 등

□ 관련규정

-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에게 단독으로 지급할 수 없음(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

구분	세부내용
종전 (20.12.31 까지)	<p><(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별표8 >> - 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집행금액임(단, 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p>
변경 (21.1.1 부터)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5항 및 혁신법 매뉴얼(21.6.30, 과기정통부)> -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중 참여연구자 전부(일부기간 참여자, 중도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p>

구분	세부내용
	<p>단계를 의미함)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만 연구수당 100% 지급 가능)</p> <p>* 적용사례) 1단계 연구개발기간이 2021~2023년일 경우, 참여연구자가 1차년도 3명, 2차년도 1명, 3차년도 1명 이라도 2~3차년도가 단독 참여과제로 판단하지 않고, 1단계 연구개발기간 전체기간 동안의 참여 연구자수로 단독과제 여부를 판단함</p>

② 실집행 인건비의 20% 초과 집행

□ 지적내용

- 연구수당은 실집행 인건비의 20%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연구수당 지급시 인건비(지급 및 미지급)의 20%를 초과하여 집행

□ 관련규정

- 연구수당은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구분	세부내용
<p>종전 (20.12.31 까지)</p>	<p><(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별표8 ></p> <p>-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부당집행금액임</p>
<p>변경 (21.1.1 부터)</p>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5항 및 혁신법 매뉴얼(21.6.30, 과기정통부)></p> <p>-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은 사용불가</p> <p>* 수정인건비 =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사용금액(현금 및 현물포함) + 학생인건비 사용금액 + 미지급인건비 총액</p> <p>※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p> <p>※ 전단계 이월금액(현금만 해당되고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은 해당되고, 다음단계 이월금액은 제외</p>

4. 간접비

① 장관승인없이 간접비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부당집행

□ 지적내용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를 연구개발기간 내 흡수하여 통합관리하지 않고, 연구개발기간 외 기간에 흡수
- 간접비는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월하여 부당하게 집행(장관승인사항은 제외)

□ 관련규정

- 처리규정에 따라, 간접비는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음

구분	세부내용
종전 ('20.12.31 까지)	<p><(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6조 및 제30조></p> <p>- (연차기준) 이월은 직접비만 이월가능(다만, 간접비 사용잔액은 장관이 다음연도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은 가능)</p>
변경 ('21.1.1 부터)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및 혁신법 매뉴얼('21.6.30, 과기정통부)></p> <p>- (단계기준)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제외)만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 가능(사전승인사항, 연구수당 이월불가)</p> <p>* 단계연구기간 내에는 별도의 이월절차 없이 단계연구기간 내 사용가능(연도별은 자동이월)</p>

1. 인건비(전문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① 전문기관 승인없이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부당 집행

□ 지적내용

- (사례1)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직접비(여비 등) 집행을 위하여 학생인건비를 직접비로 승인없이 전용하여 부당하게 집행
- (사례2) 연구개발기관의 학생인건비 급여단가 변경으로 발생한 차액을 연구개발기관 자체 전용하여 부당하게 집행
- (사례3) 항목변경이 승인없이 가능한 사업*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학생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부당하게 집행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이 아닌 이공분야사업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항목간 승인없이 전용 가능

□ 관련규정

- 인건비를 직접비((구)학술연구비)로 전용할 수 없으나 해당 사유에 한해 전문기관 승인 후 전용가능

구분	세부내용						
종전 (20.12.31 까지)	<p><(구)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4조제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직접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불가(다만,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학술진흥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이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름) 1. 주관연구책임자인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당초 편성한 전문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참여연구원인 경우 일반공동연구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인건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학술활동수당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변경 (21.1.1 부터)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 및 혁신법 매뉴얼(21.6.30, 과기정통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다른 직접비 항목으로 사용가능 ① 참여연구자가 전임교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정보공시제도의 대학정보공시 지침의 전임교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으로 임용된 경우 ② 참여연구자가 「학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한 경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참여연구자 역할</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용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책임자인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비 중 다른 항목으로 전용 사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책임자가 아닌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수당으로 전용하여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td> </tr> </tbody> </table>	참여연구자 역할	사용방법	연구책임자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비 중 다른 항목으로 전용 사용	연구책임자가 아닌 경우	연구수당으로 전용하여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
참여연구자 역할	사용방법						
연구책임자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비 중 다른 항목으로 전용 사용						
연구책임자가 아닌 경우	연구수당으로 전용하여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						

② 직접비를 인건비로 20%를 초과하여 전용

□ 지적내용

- (사례1) 당초보다 학생연구원의 참여기간이 연장되어 학생인건비 증액을 위해 직접비에서 인건비로 전용
- (사례2) 전임연구인력 추가활용으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여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

□ 관련규정

- 직접비에서 인건비로 전용가능한 범위는 직접비의 20% 이내임

구분	세부내용
종전 (20.12.31 까지)	<p><(구)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4조제5항></p> <p>- 당초 직접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불가</p>
변경 (21.1.1 부터)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 및 혁신법 매뉴얼(21.6.30, 과기정통부)></p> <p>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가능하며, 인건비**를 직접비 내 다른 항목으로 전용불가</p> <p>* 기존에 다른 대학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던 학생인건비는 인건비로 재분류되는 것이므로 항목 간 전용에 해당하지 않음</p> <p>** 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는 연구 수행 중 다른 대학에 소속된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던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 아니므로 21.1.1. 이후 신규 과제에서도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은 가능(자교 학생연구자를 다른 대학에 소속된 학생 연구자로 대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인건비로의 전용도 20% 전용 제한에서 제외)</p> <p>※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20퍼센트'에서 인건비에는 학생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음</p>

2. 학술연구비

① 연구기관 자체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부당 집행

□ 지적내용

- (사례1)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 후 연구개발기관의 자문료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집행
- (사례2) 참여연구자의 국외여비 집행시 자체 여비규정의 등급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부당 집행
- (사례3) 연구기관에서 자체 여비규정으로 지급한 국외출장비를 포함하여 현지에서 추가로 숙박비, 식비 등을 부당 집행

□ 관련규정

○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준수

구분	세부내용
<p>종전 (20.12.31 까지)</p>	<p><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p>
<p>변경 (21.1.1 부터)</p>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3항및 혁신법 매뉴얼(21.6.30, 과기정통부)> - 제1항·제2항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됨.</p>

□ 국가연구개발사업(공통사항²⁾)

1.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검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구매 및 검수의무 미존재(비영리기관은 연구비 중앙관리 원칙만 존재) (공동관리규정 제12조 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 포함) 구매할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 및 검수 의무 (사용기준 제22조제3항)
연구개발비 사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연차) • (예외) 사용실적보고서 보고일까지(연차 종료후 3개월 이내) 일부 사항에 한해 사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 또는 최종) • (예외) 사용실적보고서 보고일까지(단계 또는 최종종료 후 3개월 이내) 일부 사항에 한해 사용가능 (사용기준 제22조제4항)

2. 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용어정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계상비율 및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계상비율 ⇒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 지급 및 연구수당 계상 용도만 활용 (사용기준 제39조제1항)
연구근접지원인력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직접비 중 인건비 지급 대상이며, 별도의 용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근접지원인력(정의는 기존과 동일)
인건비계상률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별도 지급
계상률 관리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없음(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기관(전문기술생산연 포함) : 1년간의 급여 총액 단위 • 그 외 기관 : 월급여 총액 단위
계상률 입력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매월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1회 입력
인건비계상률 130% 허용기관 (정부출연(연)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이나, 대상기관은 불명확(근거법령 미비) • (참여율) 미지급인건비 포함여부 불명확(특정(연)의 4대과기원만 가능) * 기본사업의 참여율을 미포함하는 경우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관) 사용기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존보다 적용대상기관 확대) • (계상률) 총인건비계상률 도입(미지급인건비 계상률 포함하여 130%이하(출연연 기본사업의 인건비계상률 포함))
참여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참여율 100%(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130%)일 경우, 과제 참여 불가(3책5공 준수) ※ 참여율 0%는 과제참여불가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 100%(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 130%)일 경우, 과제 참여가능 (3책5공 준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1.6월, 과기정통부)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함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8을 따르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별표7,8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사용기준 제116조(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제1항)

구분	종전	혁신법
현금지급최대비율 (영리기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이내 계상원칙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계상가능
신규채용 인건비관리 (영리기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시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계획' 관리 필요 〈사용기준 제65조제6항〉

3.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p>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타 재원으로 발생한 소득 고려 필요</p> <p>※ 학생인건비 지급 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필요</p>	<p>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만 고려</p> <p>※ 학생인건비 지급 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불필요</p>
학생인건비 계상	〈신 설〉	<p>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대학재정지원사업(BK21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단기 근로소득, 창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p> <p>※ 위 사항으로 인해 계상률을 낮게 산정할 수 없음</p> <p>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여 계상</p> <p>※ 해당 학생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학생인건비에서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p>
연구참여 협약 체결	<p>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 양자 간 협약</p> <p>협약체결 단위 -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비통합관리기관) 월 단위</p>	<p>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계정책임자) ↔ 기관장 3자 간 협약</p> <p>협약체결 단위 -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비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p>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신 설〉	<p>학생연구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필요</p> <p>※ 학연프로그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출연연 및 특정연 포함</p>
박사후 연구원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근로계약 체결 후 인건비 지급)

4.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장비도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종료(단계) 2개월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긴급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장비구축과제) 최종(단계)종료일까지 <p>※ 긴급상황 및 장비구축과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사용기준 제23조제5항></p>

5.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재료비 구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종료(연차) 전까지 (일부부처)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6.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사용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한도 없음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포함),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비의 40% 이내 사용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초과 사용가능 ※ (사용용도) 국외 소재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활용, 협업연구를 위한 비용 포함
소프트웨어 도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종료(연차)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긴급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기간 초과되더라도 계약기간이 최소단위를 입증시 계상가능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개인용PC는 비영리기관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 단, 영리기관은 사용기준 별지3호 서식을 연구개발 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만 계상가능
연구실 운영 위한 소모성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상) 비영리기관만 계상가능 (대상) 연구실운영비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상) 정부출연연, 대학, 기타비영리기관(영리기관 계상불가) (대상) 연구실운영비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자체규정 마련필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없음.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계상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계획서에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사용기준 별지3호 서식)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 사용 가능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계상 불가

구분	종전	혁신법
기술도입비 현물계상한도 (영리기관)	• 별도없음	• 실제기술도입비용의 50% 이내 계상 (해당 기술 도입 완료일이 연구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
연구활동비 정산 면제	• 연구활동비(사용용도 제7호(회의비, 식대 등)에 한함)가 직접비의 5% 이내일 경우 전문기관의 정산 면제	〈삭제〉
연구근접 지원인력 연구활동비 사용범위	• 연구활동비 사용불가(출장비 등)	• 연구활동비 사용가능 (단, 연구과제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함)

7. 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부당집행 회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 평가결과가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 평가결과가 상이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삭제〉

8.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금액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개발비 집행금액의 정의가 불명확 - 주관기관의 집행금액 또는 위탁기관의 실행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금액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제3항)
정산 및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 전문기관의 정산 대상 아님 • (회수) 전문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잔액 등 직접 회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 전문기관의 정산 대상 • (회수) 전문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잔액 등 직접 회수 가능

9.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간접비비율 적용시점	• 협약체결시점(당해연도별 적용, 단계별 협약 체결시점 등)	• 연구개발과제(단계구분된 경우 해당단계) 시작 시점
간접비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불가 * 중소·중견기업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 (처리규정 제25조제7항)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가능(사전승인사항)
간접비 이관	•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불가	•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가능(사전승인사항)

구분	종전	혁신법
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5% • (예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중소기업은 10% 계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10%
간접비 기관단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기관) 통합관리가능 • (영리기관) 불가
사용제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사용불가

10.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및 사전승인대상

- 사용절차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운영 가능 (영리기관도 운영가능)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운영 가능 (영리기관 (공기업 제외)은 통합관리 불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연구개발 시작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 중 하루 〈사용기준 제71조제1항〉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시 자체재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에 한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기관 자체재원 사용 가능 〈사용기준 제71조제2항〉
증명자료 보관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명확(해당연도 종료일부터 또는 최종연구 종료일부터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단계) 종료일부터 5년
전자문서 보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수증서에 대하여만 전자적 보관 명시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9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해당 규정을 따라 보관가능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입력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 집행 후 5일 이내 • (건별) 사용내역 입력 후 집행 〈처리규정 제27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 및 건별지급 연구과제의 상황별 별도 규정 〈사용기준 제70조제2항〉
자체회계 감사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총액이 5천만원 이하 과제의 경우 자체회계감사 생략가능 〈처리규정 제27조제3항〉 	〈삭제〉

- 사전 승인

구분	종전	혁신법
사전승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연구개발비 금액 변경 • <신설> •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3천만원 이상 원래계획없이 새로 집행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변경 구매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매취소 - <신설> • 직접비를 다음연도 이월(다년도 협약과제 제외) • 신규 채용 중소기업 소속 연구자 변경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증액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1항> • 차년도 직접비를 당해연도에 사전집행하기 위한 간접비 비율 조정사항 <처리규정 제18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단계)별 연구개발금액 총액 변경 • 연도별 정부지원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변경 (현금 및 현물 변경 포함) •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 <좌동> - 연구시설장비 구축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 장소에 설치운영 • 다음단계로 직접비(현물제외) 이월(단계내 자동 이월) • 영리기관이 현금 계상 인건비 변경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증액 • 전체(단계)별 간접비 총액 증액 시
사전승인 통보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통보기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일 내 통보 (기한 연장가능하나, 연장시 연구개발기관에 사전 통보)
전문기관 보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의 20% 증액 • 참여연구자 변경(연구개발정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통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사항(통보만으로 협약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변경,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등 *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 반영 <시행령 제43조제3항>

11.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절차

구분	종전	혁신법
정산정의	• 별도없음	•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
정산주기	• 연차별 정산 (연차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단계정산 (단계구분 없으면 총연구기간 정산) - (연차) 사용내역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단계(최종))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정산 제출서류	• 사용실적보고서, 자체회계감사의견서, 현물 부담확인서 • <신설>	• <좌동> •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정산대상	• 일부 과제 추출정산(5% 이상) - 연구지원체계평가 최우수기관 제외	• 모든 과제 정산 - 단,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기관, 자체정산 역량 보유키관에 대해서는 사용실적보고서 및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제출로 정산 대체 가능
정산시점	<신설>	• 과제(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착수)
상시점검	<신설>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을 통한 상시점검 가능
정산방법	• 증빙자료 중심 정산(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출력 요구 가능	• (원칙)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및 자료를 사용한 온라인 정산 • (기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출력 요구 금지
부당집행 금액회수	• 부당집행 회수기준 및 범위에 따라 회수	•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용도 또는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용 기준 위반 금액
회수금액 면제	• 회수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삭제>
정산 이의신청 최대가능 횟수	• 별도로 정한 바 없음	• 최대 1회에 한함 <사용기준 제84조제1항>
회수금액 반납기한	• 별도로 정한 바 없음 (시스템 상 15일 이내)	•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 * 국가안보 및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시기 조정가능
회수면제	• 없음	• 다른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해 면제
회수유예	• 별도로 정한 바 없음	•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년 범위에서 연장·분할납부 가능 - 부도·폐업·파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영 악화의 경우 - 재난, 재해,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의 경우
정부지분률, 직접비, 연구수당, 간접비 사용비율 등 산출	• 해당연도 단위	• 전체(단계)연구기간 단위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사용기준 별표7, 별표8)

1. 연구개발비 공통사용기준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사용	• 별도 시스템사용 의무 없음	•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사용(법 제13조)
연구기간 외 사용	• 별도없음(과기분야 규정 준용)	• 연구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일부 사유(보고서 발간 비용 등)에 한해 사용가능
연구비카드사용	• 별도 없음	• (원칙)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발급 전 법인카드 사용가능)
현금사용 가능한도	• 당초 직접비의 2% 이내 〈처리규정 제24조제2항〉	• 한도 삭제
항목 전용제한 (인건비)	• 당초 직접비(인건비(전문인건비+학생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 인건비로 전용가능 〈처리규정 제24조제5항〉	• 직접비(인건비 및 제외) 총액의 20% 범위 이내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가능 〈사용기준 별표7〉
항목 전용제한 (간접비)	• 간접비 증액 불가	• 간접비 증액 가능 (중앙행정기관 사전승인사항)

2. 인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 계상	• 인건비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 계상 여부 불명확	• 인건비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 계상 가능
연구근접 지원인력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계상불가(간접비(인력지원비) 계상 대상)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계상불가(과기분야는 가능) 〈사용기준 별표7 인건비 제3호〉

3. 학생인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학사급 및 석사급 연구원 인건비 지급	• 학사급 및 석사급연구원 계상가능	• 학사급 및 석사급연구원 계상불가 (인건비로 계상 가능)
연구기간 외 사용	• 연구기간 종료 후 1년간 사용가능	•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불가 (출연연 및 특정연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특례적용)

4.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기준(~'20년)	변경('21년~)
연구시설 장비 구입	• 금액과 무관하게 연구시설장비 계상가능	• 건당 3천만원 이상(부가세 등 포함) 연구시설 장비 구입 시 연구시설장비비의 대상 및 ZEUS시스템 등록 (과기분야와 동일 적용)

5.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기준(~'20년)	변경('21년~)
회의비 사용	• 별도의 제한 규정 없음	•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계상불가
학회참가비 사용	• 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계상불가	• 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계상가능
논문게재료 사용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집행 가능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집행 불가
아근(특근) 식대	• 규정이 없음	• 집행가능
연구환경 유지비	• 계상불가	• 계상가능(자체규정 마련 필요)
연구실운영 소모성경비	• 계상불가	• 계상가능(자체규정 마련 필요)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미계상시 집행불가	• 계상가능(도입기한 제한 없음)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한도 없음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포함),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직접비의 40% 이내 사용가능(과기분야와 동일적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초과 사용가능 ※ (사용용도) 국외 소재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및 협업연구위한 비용 포함
소프트웨어 활용비	•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경비만 인정(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은 회수)	•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단위일 경우, 연구기간 초과하더라도 계상가능
국외출장	• 국외출장비 지급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보관의무 없음	• 국외출장비 지급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보관 의무 있음

6. 연구수당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기준(~'20년)	변경('21년~)
지급대상자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만 지급대상자임 (학생연구자 제외)	• 학생연구자도 지급가능(단,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계상불가)
계상한도	• 1인당 월 40만원 이내 (별도의 계상기준을 정할 수 없음)	• 1인당 월 40만원 이내 (연구개발과제 공고시 사전에 알려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7. 간접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간접비비율 적용시점	• 협약체결시점(당해연도별 적용, 단계별 협약체결시점 등)	• 연구개발과제(단계구분된 경우 해당단계) 시작시점
간접비 증액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불가 * 중소·중견기업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 가능(사전승인사항)
간접비 이관	•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불가	•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가능(사전승인사항)
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	• (원칙) 5% • (예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중소·중견기업은 10% 계상 가능	• (원칙) 10%
간접비 기관단위 관리	• 불명확	• (비영리기관) 통합관리가능 • (영리기관) 불가
사용제한	〈신설〉	•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사용불가
간접비 회수	〈신설〉	•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 초과한 경우 회수

8.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사전승인사항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사전승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연구개발비 금액 변경 〈신설〉 〈신설〉 직접비를 다음연도 이월(연구소지원사업 위주) 〈신설〉 〈신설〉 〈신설〉 연구책임자가 임용 또는 취업시 인건비를 직접비 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별 연구개발금액 총액 변경 연도별 정부지원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변경 (현금 및 현물 변경 포함)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당 3천만원 이상 원래계획없이 새로 집행 건당 3천만원 이상의 변경 구매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매취소 연구시설장비 구축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 장소에 설치운영 다음단계로 직접비(현물제외) 이월(단계내 자동이월) 영리기관이 현금 계상 인건비 변경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증액 단계별 간접비 총액 증액 시 〈사용기준 제73조〉 연구책임자가 임용 또는 취업시 인건비를 직접비 전용 〈사용기준 별표7〉
사전승인 통보기한	• 별도 통보기한 없음	• 15일 내 통보(기한 연장가능하나, 연장시 연구개발 기관에 사전 통보)
통보사항	• 별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사항(통보만으로 협약변경) * 연구자변경,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등 *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 반영 〈시행령 제43조제3항〉

9.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사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 사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과제 산입사용, 연구개발재투자, 성과활용, 국고반납
승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천만원 이상 시 전문기관 승인 	〈삭제〉

10.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정산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정산 (연차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하였으나, 별도 양식 및 세부집행내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정산(단계구분 없으면 총연구기간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 세부사용내역을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 입력 - (단계(최종))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정산 제출서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실적보고서, 자체회계감사의견서, 현물부담 확인서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정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과제 추출정산(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과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 기관, 자체정산 역량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의 방법으로 정산
정산시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착수)
상시점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접속을 통한 상시점검 가능
정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빙자료 중심 정산(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출력 요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통합이지바로시스템의 입력정보 및 자료를 사용한 온라인 정산 (기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출력 요구 금지
부당집행 금액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사용금액 정의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용도 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용 기준 위반 금액
회수금액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수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연구종료 후 논문게재료 등 필요경비(2년이내) 연구종료 후 학생연구자 인건비(1년 이내) 	〈삭제〉

〈과기분야와 인문사회분야 주요 차이점〉

구분	과학기술(이공)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항목 전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비 내 항목간 전용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비 내 항목간 전용제한 있음 인건비↔직접비(인건비 제외 항목)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 소속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 지급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 소속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 지급불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적용(지정기관) - 연구기간 종료후 학생인건비 지급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적용 불가 - 연구기간 종료후 학생인건비 지급불가 단, 특정(연) 및 정부출연(연)은 적용가능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 적용(지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 불가
인건비 지급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정한 급여기준 (기준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인건비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총인건비계상을 범위 내에서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 계상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학술지원사업에서 모든 인건비를 계상해야함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 월 100만원 이상 • 석사과정 : 월 180만원 이상 • 박사과정 : 월 250만원 이상 • 통합과정 : 상기 지급기준 고려 별도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 월 100만원 이내 • 석사과정 : 월 180만원 이내 • 박사과정 : 월 250만원 이내
연구시설 장비 도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전체(단계) 2개월 전까지 • (긴급상황) 최종종료(단계) 1개월 전까지 • (장비구축과제) 최종종료(단계) 전까지 ※ 긴급상황 및 장비구축과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단계) 종료 1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도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최종종료(단계) 2개월 전까지 • (긴급상황) 최종종료(단계) 1개월 전까지 • (기본사업) 최종종료(단계) 전까지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기간 초과되더라도 계약기간이 최소단위를 입증시 계상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단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구수당 계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인건비*의 20% 이내 * 인건비(현물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제외),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 • 기여도 평가 후 지급 • 연구수당 증액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참여연구자 1인당 월 40만원 이내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특성 고려하여 계상기준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여도 평가없이 정액지급 가능 • 연구수당 증액 가능(참여연구자 추가 등 사유)
연구수당 지급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자도 연구수당 지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자는 연구수당 지급불가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중복 수혜 불가)
연구수당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 초과금액 회수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p 초과한 경우 회수 	미적용